

# 한미 FTA와 건설산업, 엔지니어링부문 미국 업체 진입 가능성 커

- 표준·인증·시험 기준 변화 등 시공 부문도 대비해야, 정부 조달 범위에 민자사업 포함 -

김민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hkim@cerik.re.kr

## 네거티브 리스트-역진 방지 조항 규정

지난해 11월 29일 대통령 서명이 완료된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서비스 분야 규정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투자자분쟁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및 역진 방지(ratchet)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TA의 자유화 기재 방식(modalities)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자유화 대상 열거 방식, 예컨대 GATS<sup>1)</sup>)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되는 조치를 유보하는 방식, 예컨대

1) GATS는 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Trade in Service)의 약자임.

NAFTA) 중 선택하고 있는데, 한-EU FTA의 경우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negative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 둘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국내·외적인 운영(governance) 측면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향후 규제 도입의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ISD란 투자 유치국 정부가 ① 투자 협정상 의무, ② 투자 계약, ③ 투자 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미 FTA 제11장(투자) 제2절 투자에 규정되어 있으며, 역진 방지 조항이란 개방 수준을 현행보다 후퇴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조달시장 - 물품 및 서비스 개방 폭 확대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WTO/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이미 대부분 개방되었다. 따라서 정부 조달(제17장) 관련 사항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지만, 한미 FTA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한 한-EU FTA와 달리 정부 조달부문에서 물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 FTA로 개방 대상이 되는 조달시장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 중 제17조에 양허된 기관에 한한다. 개방의 폭은 건설시장의 경우 양국 모두 500만 SDR로 GPA의 양허 하한선을 준용하고 있으나, 물품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GPA에서 한국과 미국 공히 13

만 SDR(한화 약 9억 6,200만원, 달러화 약 20만 달러)이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미국은 10만 달러, 한국은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양국 모두 자국 조달 실적 요구 금지

한미 FTA 중 '정부 조달' 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제17.5 조 참가 자격이다. 이에 의하면 한미 양국 모두 정부 조달시 자국 내 조달 실적만을 'reference' 로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조달을 관장하고 있는 FARs(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 입찰자 선정시 미국 내 조달 실적만을 인정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조달관이 입찰 기업의 조달 실적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내 조달 실적만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 시장 판매와 EU 대상 정부 조달 실적은 reference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역시 정부 조달시 국내 실적만 인정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각 발주청의 조달 지침 등에 따라 실제 평가에 있어서는 국내 공공공사 및 공공 용역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 정부 조달 범위에 민자사업 포함

한편, 한미 FTA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BOT 프로젝트도 정부 조달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컨세션 및 BOT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이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1항에서 '민간부문'에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 법인과 민관 합동 법인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자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바 있으므로 큰 이득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 민자 사업에 관련된 입찰은 모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국제 입찰을 위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법정 임의 - 의무 인증제도 검토 필요

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한미 양국은 기술 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간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표준 판정 기준 결정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제9.3조, 제9.4조), 시험 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다(제9.5조).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포괄 지칭하는 것으로서 향후

건설 관련 법정 임의 및 의무 인증제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품질, 기술 관련 인증 등을 들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여부 검토 필수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민감한 사항은 제11장 투자 부문에 포함된 ISD 규정이다. 제11장에는 ISD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호, 투자 유치국 정부 의무와 예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규정된 협정상 의무로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제11.3조),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제11.4조), 최소 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이행 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제11.8조),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해결(ISD)(제11장 제2절) 등이다.

물론, 공공 질서 및 정부 권한 행사 서비스의 경우 투자 관련 유보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적용 시 수용 및 보상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유보'

국경간 서비스 거래(제12장)에 양

■ 이 슈 진 단

당사국에 4대 규정이 부여되어 있으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는 현재 유보함으로써 면허/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WTO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의 4가지 형태<sup>2)</sup> 중 mode 3에 해당하는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게 된다.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 추진**

한편,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향후 원활한 한미간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전문직 상호 인정(recognition)’ 추진을 위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전문직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이란, 전문 자격의 상호 인정 및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는 각 당사국의 전문직 자격 요건을 비교, 협상을 통한 조건 조정을 통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각 당사국의 전문직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자국의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 Eng. 부문 파급 효과 클 듯**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볼 때, 국내 법/제도에 대한 숙지, 하도급업체 계열화 문제 등 사업 운영상의 문제 내재로 미국 업체가 실제 시공 분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유희 자금 유입에 따른 투자자로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 D/B, T/K, CM at Risk 사업의 경우 국내 시공업체와 J/V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사업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양국의 기준 차이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공 과정상 적용되는 각종 기준들은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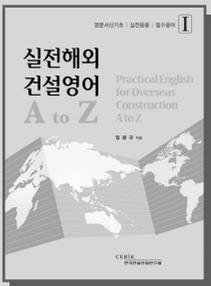
한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등을 감안해볼 때 시공 분야와 달리 건축 설계를 포함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공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미국 업체들의 빈도가 많아질 경우 국내 업 면허 기준 및 PQ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요망된다. CERIK

2) WTO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4가지 형태는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임.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